

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항목 및 기타 안내사항

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항목 및 「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」(2019.11.28.)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 사항은 표기할 수 없고,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표기가 제한됩니다. 만약 제출자료에 이름, 학교, 사진, 학교 로고 등 본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및 기재금지 항목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 지원자 본인이 블라인드 처리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학교생활기록부 기재(노출)금지 항목]

- 가.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
 - 나. 교과·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
(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)
 - 다. 교외 기관·단체(장)등에게 수상한 교외상(표창장, 감사장,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)
 - 라. 교내·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
 - 마. 모의고사·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(원점수, 석차, 석차등급, 백분위 등 성적관련 내용 일체)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
 - 바.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
 - 사. 도서출간 사실
 - 아.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상표 디자인) 출원 또는 등록사실
 - 자. 어학연수,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
 - 차. 부모(친인척 포함)의 사회·경제적 지위(직종명, 직업명, 직장명, 직위명 등) 암시 내용
 - 카. 장학생·장학금 관련 내용
 - 타.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, 기관명(기구, 단체, 조직 등 포함), 상호명, 강사명 등
 - 파.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
 - 하. 자격증 명칭 및 취득사실
- * 위 내용은 「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」을 발췌한 내용으로 이하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「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」 중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

[「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」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 사항]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영재·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| 라.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|
| 나.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| 마.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|
| 다.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| |

또한 지원자 성명, 출신고교, 부모(친인척 포함)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·경제적 지위(직종명, 직업명, 직장명, 직위명 등)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표기를 금지합니다.

포항공과대학교 총장